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m)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접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총 8개동, 총 일반공급 568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 수 : 기관추천 특별공급 52세대 중 중소기업 근로자 6세대(예비 6세대)

구 분	주택형(㎡)	59	79A	79B	84A	84B	84C	84D	계
중소기업 근로자	배정세대	-	2	-	3	-	1	-	6
	예비	-	2	-	3	-	1	-	6

■ 일정계획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20. 06. 25(예정)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건본주택 개관 예정일	2020. 06. 26(예정)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1
특별공급 신청 예정일	2020. 07. 06(예정)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정일	2020. 07. 14(예정)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 개별조회

-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건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은행창구 접수 불가)
-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시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 대상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예정) 현재 동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추천 받으신 분**

■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 요건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③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치기준금액>

구분	속초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 확인결과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을 해당기관에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80%이상을 선정함.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홍보자료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